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 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자연친화적 장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,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무연분묘 유골의 봉안 기간을 줄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의 표지 설치기준(별표 1, 별표 4 및 별표 5)

공설자연장지의 개별표지 면적, 공설수목장림 표지 면적, 사설자연장지 개별표지 면적 및 사설수목장림의 표지 면적을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에서 각각 25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하여 설치기준을 완화

나.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유골의 봉안기간(안 제26조의2)

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한 경우 그 화장한 유골의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2제1항 중 “10년”을 “5년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4호마목 중 “200제곱센티미터”를 “250제곱센티미터”로 하고,
같은 표 제5호마목 중 “200제곱센티미터”를 “250제곱센티미터”로 한다.

별표 4 제1호다목 중 “200제곱센티미터”를 “250제곱센티미터”로 하고,
같은 표 제2호다목 중 “200제곱센티미터”를 “250제곱센티미터”로 하며,
같은 표 제3호라목 중 “200제곱센티미터”를 “250제곱센티미터”로 하고,
같은 표 제4호라목 중 “200제곱센티미터”를 “250제곱센티미터”로 한다.

별표 5 제1호다목 중 “200제곱센티미터”를 “250제곱센티미터”로 하고,
같은 표 제2호다목 중 “200제곱센티미터”를 “250제곱센티미터”로 하며,
같은 표 제3호라목 중 “200제곱센티미터”를 “250제곱센티미터”로 하고,
같은 표 제4호라목 중 “200제곱센티미터”를 “250제곱센티미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연장지 설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) ① 별표 4 제1호다목, 제2호다목, 제3호라목 및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·조성한 사설자연장지(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 법 제31조제3호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② 별표 5 제1호다목, 제2호다목, 제3호라목 및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·조성한 사설수목장림에 대하여 법 제31조제3호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제3조 (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무연분묘의 봉안에 관한 경과 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매장된 유골이 봉안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의2(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) ① 법 제2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유골의 봉안 기간은 <u>10년</u> 으로 한다. ② (생 략)	제26조의2(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) ① ----- ----- ----- <u>5년</u>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473